

의안번호	제호
의결	년 월 일
연 월 일	(제회)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2년 1월 18일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22년 1월 18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6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 안 별표1의 가, 나, 다

3. 조례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해당없음
- 관련부서협의 : 해당없음
-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로, “제52조”를 “제53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을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42조제2항”을 “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설명문안)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
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피감사(조사) 공무원 선서서

선 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선서인 : (인)

다.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서

선 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

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

니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증 인 :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2조에</u> 따라 충청북도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생 략)</p> <p>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u> 도 소속 행정기관</p> <p>4. · 5. (생 략)</p> <p>6. 도가 설치한 <u>법 제146조에 따른</u> 지방공기업</p> <p>7. <u>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u>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제1조(목적) -- <u>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 제5</u></p> <p><u>3조-----</u> ----- ----- -----.</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제126조부터 제129조-----</u> -----</p> <p>4. · 5. (현행과 같음)</p> <p>6. ----- <u>법 제163조-----</u> -----</p> <p>7. <u>법 제117조제2항 -----</u> ----- ----- ----- -----. -----.</p>

<p>8. (생 략)</p> <p>② (생 략)</p> <p>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u>법 제9조</u>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u>법 제41조제3항</u>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p> <p>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u>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u>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 ③ (생 략)</p> <p>제12조(국가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 (생 략) ② <u>법 제41조제3항</u> 후단에 따라 국회 또는 의회가 감사를 실시한</p>	<p>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u>법 제13조</u>----- ----- <u>법 제49조제3항</u>----- ----- ----- ----- ----- -----.</p> <p>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u>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u>----- ----- ----- ----- -----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국가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49조제3항</u> ----- -----</p>
--	--

<p>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3조(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도지사 및 교육감은 <u>법 제42조제2항</u>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 -----.</p> <p>제13조(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 ----- <u>법 제51조제2항</u> -- ----- ----- ----- ----- ----- ----- -----.</p>
--	--	---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 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 및 그 운영 · 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 · 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 · 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 ·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產)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 · 아동 · 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 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 · 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 · 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 · 수산 · 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뜬지 · 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 · 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 · 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 · 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 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 · 군도(郡道) · 구도(區道)의 신설 · 개선 · 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

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 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 ·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 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 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 ·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 ·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